

自然公園法施行規則

建設部令 第282号(1981年 1月 6日)

제 1 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자연공원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공원지정협의 등을 위한 서류) ① 법 제 4 조 내지 제 6 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지정의 협의 또는 승인이나 심의를 위하여 관계기관에 송부하는 서류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가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원구역 예정지의 도면 및 행정구역별 면적 조서
2. 주요공원자원의 위치를 표시한 도면 및 현황 조서
3. 토지이용의 현황을 표시한 도면조서
4. 토지소유자별(국유·공유 및 사유로 구분한다) 면적조서, 이 경우 사유토지중 사찰소유토지는 따로 표시한다.
5. 공원지정의 필요성 기타 자연공원지정에 필요한 설명자료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도면은 축척 50,000 분의 1 이상의 지형도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 3 조(공원지정 등의 고시) ① 법 제 7 조 규정에 의한 공원지정의 고시는 별지 제 1 호 서식에 의한다.

② 법 제 9 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공원폐지 및 공원구역변경의 고시는 별지 제 2 호서식에 의한다.

제 4 조(공원계획의 고시) 법 제 14 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계획의 고시는 별지 제 3 호서식에 의한다.

제 5 조(공업사업시행 허가신청서 등) ① 영 제 15 조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원관리청의 공원사업시행허가신청서 또는 공원시설 관리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 4 호서식에 의한다.

② 제 1 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위치도
2. 공원사업계획서 또는 공원시설관리계획서
3. 자금계획서 및 재력을 증명하는 서류
4. 편입토지의 세목조서 및 지적도
5. 토지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타인 소유토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및 토지소유자의 인감증명서를 포함한다)
6. 공사설계도서(투지도·계획평면도·조경계획을 포함한다)

③ 영 제 15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공원사업시행허가 등에 관한 게시는 별지 제 5 호서식에 의한다.

제 6 조(공원점용허가신청서 등) ① 영 제 16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공원의 점용 또는 사용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 6 호서식에 의한다.

② 제 1 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점용 또는 사용계획서
2. 토지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 등본(타인 소유토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및 토지소유자의 인감증명서를 포함한다)
3. 지적도

4. 위치도 및 평면도

③ 영 제 16 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공원의 접용 또는 사용허가에 관한 게시는 별지 제 7 호서식에 의한다.

제 7 조(공원접용 등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사항) 법 제 23 조제 1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원의 접용 및 사용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어촌지구에서의 농수산업용 건축물 기타 공작물을 개축·재축 또는 이축하는 행위
다만, 집단시설지구로부터 300미터 이내에서 행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자연환경지구 및 농어촌지구에서의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외부를 도색하는 행위. 다만, 집단시설지구로부터 300미터 이내에서 행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농어촌지구에서의 농경지 정리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행위
4. 자연환경지구 및 농어촌지구에서의 농수산물 및 생활용수의 인수를 위하여 하천 또는 호수의 수면의 변동이나 수량의 증감을 초래하는 행위
5. 자연환경지구 및 농어촌지구에서의 1가구 5두 이하의 가축을 방목하는 행위. 다만, 꿀벌 및 조류의 경우에는 용도지구에 따른 구분과 수량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6. 자연환경지구 및 농어촌지구에서의 농수산물 및 임산물을 야적하는 행위
7. 제 1 호 내지 제 6 호에 규정된 행위외에 자연환경의 훼손이나 공중의 이용에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미한 행위

제 8 조(공사의 착공보고 등) ① 영 제 19 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착공보고서 및 준공보고서는 별지 제 8 호서식에 의한다.

② 제 1 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착수전 현황사진
2. 준공사진
3. 예정공정표

제 9 조(공원보호구역의 지정고시) 영 제 20 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보호구역의 지정고시는 별지 제 9 호서식에 의한다.

제 10 조(공원보호구역안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사항) 법 제 25 조제 3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수산업용의 건축물 기타 공작물을 개축·재축 또는 이축하는 행위. 다만, 집단시설지구로부터 300미터 이내에서 행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외부를 도색하는 행위. 다만, 집단시설지구로부터 300미터 이내에서 행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농경지 정리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
4. 농수산물 및 생활용수의 인수를 위하여 하천 또는 호수의 수면의 변동이나 수량의 증감을 초래하는 행위

제 11 조(국립공원 입장료의 징수) ① 법 제 26 조제 1 항 및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국립공원의 입장료는 별표 1의 국립공원입장료요율표의 범위안에서 당해 공원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공원관리청은 당해 공원의 입장료금표를 입장자가 보기 쉬운곳에 상시 게시하여야 한다.

③ 공원에 입장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입장권을 구입하여야 하며 입장권은 별지 제 10 호 서식에 의한다.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민 및 그 수행자
2.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
3. 만 7세 이하인 자 및 만 65세 이상인 자
4. 국가의료기관에서 정양중인 상이군인
5. 국립공원위원회 위원 및 건설부장관이 위촉 또는 추천한 학술조사자
6.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7. 당해 공원구역안에 거주하는 자

8. 당해 공원구역안의 사찰에 상시 출입하는 승려 또는 사찰에 출입하는 신도

9. 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어린이날에 입장하는 어린이, 근로자의 날에 입장하는 근로자 및 석가탄신일에 사찰에 출입하는 자

10. 제 1호 내지 제 9호에 계기한 자 이외에 건설부장관이 특히 그 출입을 인정하는 자

제 12 조 (국립공원시설사용료) ① 법 제 26조제 1항 및 제 3항의 규정에 의한 국립공원의 공원시설사용료는 당해 시설의 설치에 소요된 비용과 그 유지·관리비용을 고려하여 당해 공원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제 11조제 2항 내지 제 4항의 규정은 제 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 13 조 (비관리청에 의한 시설사용료 징수허가등)

① 공원관리청이 아닌 공원사업시행자 및 공원시설관리자가 법 제 26조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공원시설사용료징수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 11호서식에 의한 국립공원시설사용료징수허가신청서를 관할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 1항의 신청서에는 법 제 22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허가서사본과 수지에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국립공원시설사용료징수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료 징수허가를 받은 뜻을 별지 제 12호서식에 의하여 당해 공원시설을 사용하는 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 14 조 (공원점용료 등의 징수) 공원관리청이 법 제 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을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로부터 법 제 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금액은 별표 2의 기준료율을 초과할 수 없다.

제 15 조 (원인자에 대한 공원사업비용부담요구서)

① 영 제 22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사업비용원인자부담요구서는 별지 제 13호서식에 의한다.

② 제 1항의 요구서에는 비용부담원인이 되는 공사 또는 행위에 관한 설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 16 조 (영업제한 등의 공고) 법 제 37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 기타행위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공고를 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원의 명칭과 제한 또는 금지하는 영업 기타행위의 종류, 구역 및 그 제한 또는 금지의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한 또는 금지의 대상자가 특정된 경우에는 통지로 공고에 가름할 수 있다.

제 17 조 (손실보상재결신청서) ① 영 제 27조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재결신청서는 별지 제 14호서식에 의한다.

② 제 1항의 손실보상재결신청서에는 협의경위서 및 손실보상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 18 조 (타인의 토지의 출입과 일시사용통지서)

① 법 제 51조제 2항의 규정에 의한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및 일시사용등의 통지는 별지 제 15호서식에 의한다.

② 법 제 51조제 4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제 16호서식에 의한다.

제 19 조 (권리·의무의 양도허가 신청서) ① 영 제 31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무의 양도허가신청은 별지 제 17호서식에 의한다.

② 제 1항의 신청서에는 양도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 20 조 (권리·의무의 상속신고서) ① 영 제 32조제 2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무의 상속신고는 별지 제 18호서식에 의한다.

② 제 1항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상속인의 호적등본
2. 상속사유서

제 21 조 (발기인으로부터의 권리·의무승계신고서)

① 영 제 33조제 2항의 규정에 의한 발기인으로부터의 권리·의무승계신고는 별지 제 19호서식에 의한다.

② 제 1항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법인설립등기부 등본
2. 법인의 정관

3. 승계 사유서

제 22 조 (합병으로 인한 권리·의무의 승계신고서)

① 영 제 34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합병으로 인한 권리·의무의 승계신고는 별지 제 20 호 서식에 의한다.

② 제 1 항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합병으로 인하여 신설된 법안 또는
2. 승계사유서

제 23 조 (다른 법령에 의한 허가의 신고서) 영 제 36 조의 규정에 의한 “다른 법령에 의하여 허가 받은 사항”에 관한 신고는 별지 제 21 호 서식에 의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법령의 개정) 공원구역내광물채굴허가 사무처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 조 중 “공원법 제 16 조 및 제 39 조”를 “자연공원법 제 23 조 및 제 50 조”로 한다.

(별 표)

국립공원입장료요율표

(단위 : 원)

구 분	대 인	군인·학생	소 인
개 인	200	150	70
단 체	140	100	50

비 고 :

1. 대인 : 만 7 세미만의 자 및 만 65 세이상인 자와 소아, 학생, 군인 이외의 자를 말한다.
2. 군인 : 제복을 착용한 하사 이하의 군인을 말한다.
3. 학생 : 제복을 착용하거나 학생증을 소지한 중학교, 고등학교 및 대학(대학교를 포함한다)의 학생을 말한다.
4. 소아 : 국민학교 학생 및 만 7 세이상 12 세이하인 자를 말한다.

(별 표)

점용료 또는 사용료요율기준표

점용 또는 사용의 종류	기 준 요 율
1.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축, 증축, 이축이나 물건의 야적 및 서류	인근토지 임대료 추정액의 100/100
2. 광물의 채굴	산지근처의 시가에서 채굴비 및 운반비를 공제한 금액의 50/100
3. 축목, 토석 사력의 채취	산지근처의 시가에서 채취비 및 운반비를 공제한 금액의 70/100
4. 토지의 개간	수확예상액의 25/100
5. 수면의 대립 또는 간척	수확예상액의 40/100
6. 하천, 호수의 수면의 변동이나 수량의 증감을 초래하는 행위	인근 물값의 50/100
7. 야생동물의 수렵·포획이나 야생식물의 채집	시가의 100/100
8. 가축의 방목	토지임대료 추정액의 20/100
9. 법제 22 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경우	법제 27 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금액의 10/100